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169호 1999. 3. 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904호)되어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 건물 등에 대한 권리변동시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 항제1호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하며, 동항제7호중 “서울특별시 · 직할시”를 “특별시 · 광역시”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한다.

제 21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